

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음성군은 '금왕읍 금석1리 농로포장공사'를 추진하고 있는바, 해당 사업이 포함되는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-16번지 일원은 도유 일반재산으로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- '금왕읍 금석1리 농로포장공사' 추진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□ 사업개요

- 대 상 : 토지(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-16번지 일원)
7필지, 5,124㎡ 중 980㎡ 편입
- 사용기관(다른 자치단체) : 음성군
- 동의내역 :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(금왕읍 금석1리 농로포장공사)
- 적용시기 : 2025. 5. 1. 부터

□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

- 사업기간 : 2025. 5월 ~ 6월
- 위 치 :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-16번지 일원
- 사 업 비 : 48,110천원(군비 100%)
- 사업내용 : 농로포장공사 1식
- 사업규모 : L = 250m, B = 3.0~3.5m
- 세부내역

연번	구 분	세부내역	단위	수량	비고
1	토공	터파기	272	m ³	
		층따기	20	m ³	
		되메우기	86	m ³	
		운반(잔토)	197	m ³	
2	배수공	배수관	5	m	
3	포장공	콘크리트포장	721	m ²	
4	부대공	운반비	1	식	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-16번지 일원 소재 충청북도의 일반재산인 토지 7필지에, 음성군이 “금왕읍 금석1리 농로포장공사”^{*}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설치 등을 하려는 것임.

^{*} 해당 공사는 기존에 존재하는 농로가 우천 시 불편이 지속된다는 금왕읍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음성군이 추진하는 공사임.

【참고】 본 건 대상 토지 목록

연번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비고
1	토지	음성군 금왕읍 금석리	431-12	전	625	162	충청북도 일반재산
2	토지	음성군 금왕읍 금석리	431-16	답	2,539	424	
3	토지	음성군 금왕읍 금석리	431-20	답	205	49	
4	토지	음성군 금왕읍 금석리	431-21	전	417	54	
5	토지	음성군 금왕읍 금석리	431-22	답	179	74	
6	토지	음성군 금왕읍 금석리	431-23	전	754	70	
7	토지	음성군 금왕읍 금석리	431-101	하천	405	147	
합 계					5,124	980	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.

- 본 건의 경우 충청북도와 음성군 사이에 도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, 해당 부지에 대해 '25. 5. 1. ~ '28. 12. 31. 사이에 음성군에 무상대부하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및 사권 설정 금지를 서면합의서에 명시하여 도 행정재산의 재산권 침탈에 대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